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124
----------	-----

제안연월일 : 2023. 04.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HAPPY700 평창시네마의 협약기간이 만료(2023. 8. 12.)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기간 연장(재협약) 계획을 수립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가. 위탁사무명

-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7조
- 추진 필요성
 - 위탁업무가 관리·운영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관리사무로, 기 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및 관리 전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명 칭 : HAPPY700 평창시네마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 용평복지회관 2층
- 주요시설 : 연면적 456.42m²
[영화관 1(132.42m²), 영화관 2(139.24m²), 계단실(42.26m²), 로비(131.48m²), 창고(11.02m²)]

마. 민간위탁기간

- 현위탁기간 : 2020. 8. 13. ~ 2023. 8. 12.
- 갱신기간 : 2023. 8. 13. ~ 2026. 8. 12.(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기 수탁자 재협약 : 평창영화봄협동조합(대표 : 전규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17,424천원(군비)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 영사기 대여 및 유지보수 등
- 사무관리비 5,460천원(군비)
 - 시설 유지보수 용역
- 공공운영비 20,400천원(군비)
 - 전기요금, 공과금 등
- 행사운영비 20,000천원(군비)
 -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아. 민간위탁 재협약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평창군 직영도 가능하나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주무관청의 관리와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조합에 관리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음
 - 조합은 기대수익률이 낮아 최신영화 개봉 영화관이 부재한 소규모 지역에 영화관을 개설 및 운영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본 조합의 설립 목적 자체에서 책임과 공신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평창군 직영과 동일한 비용(관리인력 인건비, 운영비)이 소요되지만, 수탁기관 사무국이 대상 시설 내 사무공간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군 직영의 원거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음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당초 위탁기간 (2020. 8. 13. ~ 2023. 8. 12.) 동안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용이
 - ※ S등급 “탁월” (90점이상), A등급 “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재협약 진행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이 용이
 - 정기적인 감사 및 결산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평창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 우수(A등급) : 재협약 추진 타당

[붙임1]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부분 발췌

-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분위기 조성.

III 평가 결과

□ 평가 점수 및 항목별 제언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배점	득점		
합계			100	83		
운영관리 활동성과 (40)	사업계획 (5)	사업계획	목표부합성과 적정성	3	3	
		체계성	사업계획 보고 및 관리	2	2	
	재무예산 (10)	예산집행 적절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적정성	3	3	
			예산 집행률(100%)	3	3	
	조직인력 (10)	관리감독	감사 및 정산결과	감사 및 정산검사 결과(적정)	4	4
			인력 복무관리 (직접일자리 배치 및 운영)	4	4	
			적정인력 유지 여부(적정) 채용의 공정성	3	3	
	시설관리 (5)	안전관리	안전사고 여부 및 방지 노력	3	3	
		공간관리	사업에 필요한 공간 활용	2	1	
	시설운영 (10)	협약서 준수사항	운영의 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협약서 준수사항 이행여부(준수) ※준수 = 10점, 미준수 = 0점	10	10	
고객지향 활동성과 (60)	마케팅 (20)	홍보구축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0	10	
	관람객 이용 만족도 (40)	프로그램 실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작은영화관 활성화 운영) ※0~2회 = 3점, 3~4회 = 5점, 5~6회 = 7점, 7회~ = 10점	10	7	
		관람료 비율	일반영화관 관람료에 대한 관람료 비율(70% 이내 수준) ※준수 = 10점, 미준수 = 0점	10	10	
		관람객 이용실적	관람객 이용 실적	20	17	

○ 평가항목별 제언

▶ 사업계획

- HAPPY700 평창시네마 관리위탁협약서와 같이 영화관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음

▶ 재무예산

- 정산검사를 누락없이 수행하였으며 적절한 예산 사용을 확인받음

▶ 조직인력

- 사무에 투입된 인력 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적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운영하였음
-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선발된 지역 인력으로 채용하여 구성

▶ 시설관리

- 관람객에게 휴식공간 등을 제공 하였지만, 활용이 미흡하여 추후 보안 예정(스마트가든 조성 23년 4월 이후)
- 안전한 시설관리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CCTV 설치로 사고 발생 없음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소방 안전관리용역, 전기 안전관리용역 등)

▶ 시설운영

- HAPPY700 평창시네마 관리위탁 협약서 제4조(운영의 조건) 제5조(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운영함

▶ 마 케 팅

- 관람객에게 영화 상영전 스크린 광고 진행(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결과물 등)
- 유관기관 및 연계 미흡으로 홍보에 어려운 점이 있음

▶ 프로그램 실적

- 작은영화관 활성화 사업 진행으로 시네마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임 ※ 2021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미운영

1. 2020 작은영화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2. 2022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관으로 영화봄! 우리함께 힐링ON)
3. 2022년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도비보조)
4. 2022년 HAPPY700 평창시네마 겨울영화제
5. 2023년 HAPPY700 평창시네마 봄영화제

▶ 관람료 비율

- 영화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진행됨

※ 2020~2022 2D영화 기준 6000원, 2023~ 2D 기준 7000원

▶ 관람객 이용실적

	관람객수			
	2020	2021	2022	2023
계	3,885	22,444	39,778	6,053
1월		586	2,000	4,065
2월		967	1,320	1,988
3월		1,010	807	
4월		729	778	
5월		1,391	3,504	
6월		1,281	5,582	
7월		2,611	5,514	
8월	1,756	3,517	6,057	
9월	491	2,213	3,847	
10월	1,638	1,931	2,227	
11월		3,384	2,603	
12월		2,824	5,539	

- 영화산업 특성상 개봉영화에 따라 관람객 수가 달라지며, 민간위탁기간 동안 코로나19 등 정상운영이 어려움

□ 종합의견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83점으로 "A"(우수) 등급으로 평가함.
-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과문화 분위기 조성
- 2023. 8. 12.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가 인정되어 재협약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협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